

#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 ①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실장 김 한수



## 목 차

1. 개 요
2. WTO/TBT협정과 문제점
3. 유럽연합국(EU)내의 상호인정
4. 유럽연합의 표준전략
5. 미국의 표준화 정책
6. 일본의 표준화 동향
7. 우리나라의 표준화 동향
8. 선진국의 표준화동향 종합과 우리의 방향

### 1. 개 요

「ISO 9000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많다. 반면에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자사의 품토에 맞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못 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ISO 9000 자격증과 매뉴얼이 그 기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업의 경영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실제로 제품의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품관리를 국제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각오가 확고하게 실행될 때에 그 자격증과 매뉴얼은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세계경제시장에서 비록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하여도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문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제품은 국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WTO/TBT 협정하의 무역환경이다. 표준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표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관련문서를 구비하였는가가 국제무역의 기본 요건이 된 시대



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은 정부와 산업체가 합심하여 세계무역 경쟁에서 자국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표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한지 오래다. 전략적 표준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기업활동을 글로벌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은 그들의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체는 그들의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선이 지정하는 국가의 기술기준과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표준(Korea Standard)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KS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제품은 거의 없는 반면에 선진국은 그들의 제품 대부분을 자국의 국가 또는 단체 표준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관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19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은 「단일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 국제표준을 기초로 자국의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제정하면 국제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이러한 배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향후에 필요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서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을 국제표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표준화정책을 혁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 통설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3대 경제축의 하나로 자처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도 독자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레벨에 못 미치고 상기 5개국의 표준을 취합하여 자국의 것으로 제정한 정도로 보고 있다. KS의 대부분이 일본공업규격(JIS)을 번역한 정도인 우리의 기술력에 준하여 한

국표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다고 감히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은 어렵다」 또는 「한국인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관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표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주위의 제품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국제표준의 골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을 타국에 위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국제표준에 대한 정의를 유럽은 IEC/ISO 등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표준(De Jure Standard)을 미국과 일본은 시장의 요구에 준하여 관련 단체에서 발행하여 범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국제표준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2. WTO/TBT협정과 문제점

### 2.1 TBT협정의 의의

1947 GATT 규정은 기술기준과 표준(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s)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GATT 워킹그룹에서 수입업자가 직면한 비관세 장벽의 가장 큰 범주가 기술장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수많은 협상이 있던 후, 1979 토쿄라운드에서 GATT의 32개 계약당사자가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서명하였다. 이 신규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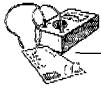
WTO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이 되었던 것을 토쿄라운드에서 Standard Code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로써 표준(Standards)과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즉, 표준과의 적합성은 자율적인(Non-Mandatory) 반면에 기술기준과의 적합성은 당연히 강제적(Mandatory)이다. 만일 수입된 제품이 적용된 표준에는 적합하나 관련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입국가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준의 경우도 비투명 배타적(Non-Transparent and Discriminatory) 적합성 평가절차는 보호주의자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다. TBT협정(Standard Code라고도 함)은 국가의 기술기준과 표준의 차이로 빚어지는 무역에 대한 방해물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표준이 생산자나 수출업자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다양한 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심각한 비용상승을 초래한다. 표준을 전횡적으로 설정한다면 보호주의의 증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역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TBT협정은 너무 많은 다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여도는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시스템이 생산성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폭적으로 인정되었다. 국제표준을 적용하면 WTO 각 회원국의 잠재적 시장접근 장벽을 진실로 감소시키고, 마찬가지로 제 삼국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한 잠재적인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다.

## 2.2 TBT협정의 문제점

TBT협정의 본문 2.4에 “기술기준에서 요

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기준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제표준이란 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의가 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동안 영거주춤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유럽은 TBT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가 발행하는 표준으로 해석하나 미국이 이러한 유럽의 국제표준 정의에 동의를 아니하기 때문이다. TBT협정은 한마디로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길만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도구(Tool)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면서도 국제표준을 어느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은 거의가 유럽에 있다. 즉, 제네바에 국제표준화 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맹(ITU), 그리고 비엔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유럽표준화기구(CEN)와 ISO가 비엔나협정을 유럽전기기술위원회(CENELEC)와 IEC가 드레스덴협정을, 각각 제후하여 유럽에 기초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실행한다는 전략 하에서 적극적이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표준을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에 바탕을 두는 이른바 De Facto Standard론을 주장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기계학회(ASME)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코드는 이미 60개국이상에서 사용 또는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을 증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보급이 많이 된 미국표준을 채택하여 국제표준으로 정의하면 국제표준 개발의 비용도 절감하고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미국의 관련 표준들이 국제표준이 됨으로서 미국 기술에 의한 상품 수출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상무부는 결론을 짓고 있다.

### 2.3 자유무역의 첫 걸음은 상호인정

자유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교역 상대국간의 상호인정이다. 국제간의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검사된 상품을 상대국에서 재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상호인정의 연장선상에 자유무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가가 상호인정 협정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첫걸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호인정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들, 즉 전기, 기계·화학, 의약, 의료기구, 건설재료 등을 대상으로 각국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안전규제를 상호 수용하면 이중규제를 회피하게 되어 이것에 의해서 무역에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절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되었던 메이커나 수출자의 불안감과 예측 곤란하였던 문제점이 경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 상호 인정협정이다. TBT협정의 제6조에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의 인정과 MRA의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구가 6.3의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기꺼이 개시할 것을 장려한다.」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1년 12월 7일 중국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총국(AQSIQ)과 중국인증승인국(CNCA)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필수제품인증시스템(CPCS :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이다 이것은 WTO에 가입한 중국이 TBT협정을 비롯한 국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하려는 규제 방침의 공포이다. 총 19개의 범주에 132개 제품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 발표한 조달 방침으로 기존의 장성마크(CCEE)와 수입품질허가마크(CCIB)를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로 통합기로 한 것이다. 2002년 5월 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1년간 기존제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03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MRA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유럽연합국(EU)내의 상호인정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미국의 경제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유럽 단일의 경제권 형성”이 최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 나라가 로마에 모여서 이른바 “로마협약”(1957)을 체결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사람(Person), 자본(Finance), 서비스(Service), 상품(Goods) 등 4개 사항을 협약국내에서 국경 없는 자유이동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 자본, 서비스는 자유이동에 커다란 장벽이 없었으나, 상품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술기준 및 표준이 서로 달라서 자유이동에 걸림돌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